

라. 문화재보호구역 조정 사유

연번	지정명칭	조정 사유
1	경주 감은사지	○ 사적 제158호 「경주 문무대왕릉」 과 연계된 유적으로서 유적 정비 관리에 필요한 부지와 현재 주차장 등 관람객 편의 공간으로 사용하는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
2	경주 성동동 전랑지	○ 발굴조사 결과 유구가 확인되는 성동동 전랑지 북측 부지를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

3. 고 시 일 : 관보 고시일

4. 특기사항

- 「토지이용계획 기본법」 제8조(지역·지구등의 지정 등)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'문화재공간정보(GIS)서비스(<http://www.gis-heritage.go.kr>) 알림마당-지형도면고시'에서 열람이 가능합니다.

5. 연 락 처

가. 문화재청 고도보존육성과

- 전화 (042)481-3105 / 팩스 (042)481-3109
- 주소 (우 35208)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1동

나. 지방자치단체

- 경상북도 문화유산과
 - 전화 (054) 880-3168 / 팩스 (054) 880-3179
 - 주소 (우 36759) 경상북도 안동시 풍천면 도청대로 455
- 경주시 문화재과
 - 전화 (054) 779-6111 / 팩스 (054) 760-7405
 - 주소 : (우 38102) 경상북도 경주시 양정로 260(동천동)

●산림청고시제2018-104호

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(단가)을 일부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8년 12월 26일

산 립 청 장

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(단가) 일부개정

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(단가)을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(목적) 이 고시는 「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(대통령령)」 제4조에 따른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산정기준)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재난복구사업을 위한 지원(산림청 소관 사유시설)

품목별	규격	단위	단가(원)	비고
○ 산림시설 복구	표고재배사(표준모델 표고양묘)	m ²	27,008	
	표고재배사(툽밥배지 표고양묘)	m ²	44,931	
	대추비가림-개량형(개폐기없음)	m ²	6,605	
	대추비가림-개량형(수동개폐기)	m ²	6,827	
	대추비가림-연동형(자동개폐기)	m ²	8,899	
	대추비가림-우산형(수동개폐기)	m ²	9,738	
	대추비가림-우산형(자동개폐기)	m ²	10,162	
○ 입엽시설 철거비	(필요할 경우)	지수	재난지수의 10%	

품목별	규격	단위	단가(원)	비고
○ 대파대(산림작물 복구)	표고자목(1.2m)	본	3,139	
	잔디(과종생산비)	m ²	1,459	
	조경수분재(묘목기준)-조경수	m ²	5,806	
	조경수분재(묘목기준)-분재	m ²	5,806	
	유실수(묘목기준)-밤	m ²	107	
	유실수(묘목기준)-대추	m ²	199	
	유실수(묘목기준)-뽕은감	m ²	175	
	유실수(묘목기준)-호두	m ²	322	
	유실수(묘목기준)-은행	m ²	284	
	야생화(종자대, 비료대)	m ²	894	
	산림작물(묘목기준)-약용류	m ²	1,505	
	산림작물(묘목기준)-복분자	m ²	655	
	산림작물(묘목기준)-머루	m ²	1,750	
	산림작물(묘목기준)-다래	m ²	1,560	
	산림작물(종자대)-도라지	m ²	1,003	
	산림작물(종자대)-더덕	m ²	1,058	
	산림작물(종자대)-두릅	m ²	1,847	
	산림작물(종자대)-취나물	m ²	690	
	산림작물(종자대)-산양삼	m ²	3,337	
	산림작물(종자대)-약초류	m ²	939	
산림작물(종자대)-표고톱밥배지	m ²	19,103		
○ 농약대	병해충방제(산채류)	m ²	76	
	병해충방제(수실류)	m ²	110	
	병해충방제(산양삼, 약초류)	m ²	78	
	병해충방제(약용류)	m ²	85	
	병해충방제(야생화)	m ²	329	

제3조(재검토기한) 산림청장은 「훈령·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(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)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●산림청고시제2018-106호

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 및 지형도면

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19조 규정에 따라 자연휴양림 지정구역을 변경 고시하고, 「토지이용규제 기본법」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.

2018년 12월 26일

산 림 청 장

1. 자연휴양림 지정구역 변경고시

(단위:m²)

명 칭	위 치	당초지정		변경지정		증(△)감		지 목	소유자
		지번	면적	지번	면적	지번	면적		
성불산 자연휴 양림	합 계	3필지	810,814	6필지	581,037	4필지	△229,777		
	괴산군 괴산읍 검승리	산26-1	412,392	산26-1	412,392			임	괴산군
	"	산28-1	283,262	산28-1	19,186		△264,076	임	"
	"			산28-12	1,061		1,061	임	"
	"			산28-13	9,304		9,304	임	"
	"			263-6	23,934		23,934	대	"
괴산군 괴산읍 매물리	산60	115,160	산60	115,160			임	산림청	